

# 예 산 총 칙

2026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26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| 구 분                | 세입·세출예산총액   | 일시차입한도액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합 계                | 540,769,037 | 16,223,071 |
| 일반회계               | 520,451,043 | 15,613,531 |
| 특별회계               | 20,317,994  | 609,540    |
| 기타특별회계             | 20,317,994  | 609,540    |
|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      | 522,810     | 15,684     |
| 건축진흥특별회계           | 100,620     | 3,019      |
|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| 30,000      | 900        |
|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      | 6,006,220   | 180,187    |
|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    | 2,360,810   | 70,824     |
|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        | 1,000,400   | 30,012     |
| 수질개선특별회계           | 61,200      | 1,836      |
|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       | 611,867     | 18,356     |
| 함평공영터미널운영특별회계      | 104,614     | 3,138      |
| 원자력발전지역지원시설세특별회계   | 3,033,000   | 90,990     |
| 상수도특별회계            | 6,486,453   | 194,594    |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,545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28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